



제254회 임시회
2006. 10.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.

□ 2006년 9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및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개정이유는

-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(법률 제7670호, 2005.8.4) 및 동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9322호, 2006.2.8)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

□ 주요 내용은,

- 안 제3조의 현행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여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월정수당은 월 1,200,000원으로 하고

- 제7조(회기수당 지급기준) “삭제”하며
- 별표 1(국내여비 지급 기준표)중 일비 10,000원을 20,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.

□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지방의원 유급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·공포되었으며, 월정수당 지급기준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며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충청북도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1,200,000원으로 개정하고 이의 적용을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며
- 2006년 1월 12일에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1항 관련 국내 여비 정액표중 1일당 일비가 10,000원에서 20,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